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9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김선교 · 이현승
김은혜 · 최보윤 · 박충권
유용원 · 주호영 · 이달희
이만희 · 안철수 · 김장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, 예산안·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.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.

그러나 저출산·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,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,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예산안·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,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,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,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의2 신설 등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6조의2(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 의무)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(이하“재정준칙”이라 한다)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
2.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(통합재정수지에서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기금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)의 적자 규모 비율이 100분의 3 이내일 것. 다만,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으로 제1호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2 이내일 것

3.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(국가채무 중 그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말한다)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

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·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산정방법과 적자성채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,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6조의3(재정준칙 적용의 예외)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)가 발생한 경우

2. 경기침체, 대량실업, 남북관계의 변화,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도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준칙

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6조의4(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 등) ①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(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 재정수입 증대방안,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포함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「국회법」 제84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그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정부는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「공적자금상환기금법」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

지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6조의5(재정전략위원회) ①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 점검,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,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재정준칙 준수 여부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
3.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건전화 관련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,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장, 기획예산처 차관 중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차관, 한국개발연구원장,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·교육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7조제1항 중 “재원조달방안을”을 “기존 사업의 축소·폐지나 제도 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”로 한다.

제9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한 회계연도에도 국가채무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세계잉여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정준칙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또는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의 비율이 제8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준에 단계적으로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국가재정법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6조의2(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 의무)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(이하“재정준칙”이라 한다)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 <u>1.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</u> <u>2.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(통합재정수지에서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기금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)의 적자 규모 비율이 100분의 3 이내일 것.</u>

다만,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으로 제1호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2 이내일 것

3.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(국가채무 중 그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말한다)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

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·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산정방법과 적자성채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 여

<신 설>

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
마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적
정성을 재검토하고, 그 결과를
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
하여야 한다.

제86조의3(재정준칙 적용의 예외)

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
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
편성할 때 제86조의2제1항에
따른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
니할 수 있다.

1.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(「재
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
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
재난을 말한다)가 발생한 경
우

2. 경기침체, 대량실업, 남북관
계의 변화, 경제협력과 같은
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
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
있는 경우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재정
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
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
편성한 경우에도 제86조의4에

<신 설>

따른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6조의4(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 등) ① 정부는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(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 재정수입 증대방안, 지출 구조 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포함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「국회법」 제84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그 수정 또는 재작성을

<신 설>

요구할 수 있다.

④ 정부는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「공적자금상환기금법」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6조의5(재정전략위원회) ①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 점검,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

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,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재정준칙 준수 여부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
3.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건전화 관련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,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장, 기획예산처차관 중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차관, 한국개발연구원장,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·교육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.

<u>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</u> <u>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